

정 관



동원수산주식회사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동원수산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DONG WON FISHERIES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산업
2. 수산제조업
3.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업
4. 수산물 냉동운송보관업
5. 수출입업
6. 농수축산물 도매 및 가공업
7.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8. 해상화물운송사업
9. 일반대리점 및 선박대리점업
10. 음, 식료품 도소매업
11. 외식산업(식량업)
12.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사업<신설 2001.3.16>
13. TV 홈쇼핑 판매업<신설 2001.3.16>
14. 빵가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신설 2006.3.17>
15. 기타 가루(분)의 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신설 2006.3.17>
16. 빵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신설 2006.3.17.>
17.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유통업 <신설 2017.3.17.>
18. 해외취업선원 송출업무 및 대리점업 <신설 2017.3.17.>
19. 식품소분업 및 유통전문 판매업 <신설 2017.3.17.>
20. 단체급식 및 군·관납업 <신설 2017.3.17.>
21. 선박운항대행 및 관리업 <신설 2017.3.17.>
22.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업 <신설 2017.3.17.>
23. 인터넷·방송·신문 및 기타 인쇄물 등을 이용한 통신 판매업 <신설 2017.3.17.>
2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ongwonfish.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개정 2010.3.19>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백만주로 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8%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개정 2014.3.21.>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개정 2014.3.21.>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개정 2014.3.21.>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개정 2014.3.21.>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2014.3.21>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개정 2008.3.21, 2014.3.21>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개정 2008.3.21, 2014.3.21>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개정 2005.3.18, 2008.3.21, 2014.3.21>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개정 2008.3.21, 2014.3.21>

5. <신설 2010.3.19><삭제 2014.3.21>

6. <신설 2010.3.19><삭제 2014.3.21>

7. <신설 2010.3.19><삭제 2014.3.21>

③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개정 2014.3.21>

④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개정 2014.3.21>

⑤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3.16><단서신설 2014.3.21>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신설 2014.3.21>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3.21>

제9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신설 2010.3.19.]

제10조(시가발행) <삭제 2004.3.19>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개정 2010.3.19>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3.20>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개정 2003.3.14>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8.3.21., 2014.3.21>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08.3.21, 2014.3.21>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08.3.21, 2014.3.21>

3. <개정 2008.3.21.><삭제 2014.3.21.>

②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3.21>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신설 2014.3.21>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 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신설 2014.3.21>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신설 2014.3.21>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4.3.21>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15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50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개정 2014.3.21>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3.14., 2014.3.21>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3.21>

⑦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 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4.3.19, 2005.3.18, 2014.3.21>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8.3.21., 2014.3.21>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08.3.21, 2014.3.21>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신설 2008.3.21.><개정 2014.3.21>

3. <신설 2008.3.21.><삭제 2014.3.21.>

②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3.21>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신설 2014.3.21>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신설 2014.3.21>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신설 2014.3.21>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개정 2014.3.21>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15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50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개정 2014.3.21>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3.21>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3.21>

⑦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 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4.3.19, 2005.3.18, 2014.3.21>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개정 2005.3.18>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3.18>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3.3.14>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서울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3.14, 2004.3.19, 2009.3.20>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개정 2005.3.18>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3.18>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6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3.18, 개정 2010.3.19>

②이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 2명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29조 제2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2.3.15>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5.3.18>

②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 대외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할 것인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인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또한 이사회 결의로 각 대표이사의 대내적 업무관장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3.18>

제34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회가 수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제18조, 제 21조, 제37조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행할 자 및 그 의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를 미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5.3.18>

②대표이사 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직위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3.18>

제34조의2(경영임원)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②경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개정 2005.3.18>

③경영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용어수정 집행임원→경영임원 2012.3.16]

제34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①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3.14]

제35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2005.3.18>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16.>

⑥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2.3.16.>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16.>

제36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3.18>

③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38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단서신설

2012.3.16.>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16.>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보수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과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과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이사과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상법 제385조제1항 후단의“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되거나, 이사로서의 현저한 결격사유 또는 기존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없이 이사회 이사 재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시에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부결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해임 또는 재선임안 부결이 그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선임 결의(이미 중임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결의를 기준으로 한다)시의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 원, 이사에게 30억 원을 지급한다.<신설 2010.3.19.><개정 2012.3.16.>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42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3.18>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12.3.16.>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신설 2012.3.16>

③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3.18.><개정 2012.3.16>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18.><개정 2012.3.16.>

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 2010.3.19>

제4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개정 2005.3.18>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제44조의2(주식의 소각) <삭제 2012.3.16>

제45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의2(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2.3.16.>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신설 2012.3.16.>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전문신설 2010.3.19]

제46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35조, 제38조, 제43조, 제44조의2, 45조의2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정관연혁

1970년	04월	20일	제정
1970년	05월	05일	개정
1971년	06월	30일	개정
1971년	10월	26일	개정
1972년	10월	18일	개정
1973년	07월	26일	개정
1980년	06월	25일	개정
1984년	07월	06일	개정
1985년	08월	01일	개정
1986년	12월	15일	개정
1990년	03월	20일	개정

1992년	01월	21일	개정
1996년	07월	01일	개정
1998년	03월	20일	개정
1999년	03월	19일	개정
1999년	05월	08일	개정
2000년	03월	17일	개정
2001년	03월	16일	개정
2002년	03월	15일	개정
2003년	03월	14일	개정
2004년	03월	19일	개정
2005년	03월	18일	개정
2006년	03월	17일	개정
2008년	03월	21일	개정
2009년	03월	20일	개정
2010년	03월	19일	개정
2012년	03월	16일	개정
2014년	03월	21일	개정
2017년	03월	17일	개정